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희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걸 의원입니다.

지난 2월 3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국유재산법», 「하천법», 「정부조직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하천점용료 등을 분할납부할 경우 연 6%의 이자를 책정하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하천점용료 등의 산정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부과 금액을 5천원으로 상향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